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003호

2026년 제1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3명)

근무지역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창원	행정	3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가. 근무조건

-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5개월 ('26.3.30. ~ 8.29.)
- ㅇ **(보 수)** 시급 10,320원 (만근 시 월 2,156,880원 / 급식비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 ㅇ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
-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수행예정직무
행정	지역정책과(2명)	ㅇ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 지원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통계 작성 지원 ㅇ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규격 등) 업무 지원 ㅇ 지역정책과 간담회, 워크숍 등 행사 지원 ㅇ 경남청 SNS 관리 및 자료 업로드
	지역혁신과(1명)	ㅇ 소상공인지원팀 사업(동행축제, 온누리상품권 신청서 관리 등) 업무 지원 ㅇ 전통시장 재난 현장대응 지원 ㅇ 지역혁신과 간담회, 워크숍 등 행사 지원

※ 응시원서 제출 시 희망부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 3. 5.) 기준)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정규모집 미달로 인한 추가 모집 공고에서는 동 조건 삭제 가능)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단, 횟수 제한 시행 이전('23년~'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허용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청년인턴 지원서(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참여의지 총 100점)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 를 제출 받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② 기관·직무에 대한 이해도, ③ 정책 제안 참신성·실현 가능성,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⑤ 공무수행 책임감·윤리의식
- **(평가방식)**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정책제안서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정책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중기부 홈페이지 내 주요정책-정책자료-정책소개 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6. 2. 3.(화) ~ 2. 12.(목)

○ 원서접수 : 2026. 2. 9.(월) ~ 2. 1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2. 25.(수)

○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6. 2. 25.(수) ~ 3. 3.(화)

○ 면접시험일 : 2026. 3. 5.(목)

※ 면접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3. 16.(월)

※ 면접시간,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 방법

○ 제출기간 : 2026. 2. 9.(월) 09:00 ~ 2. 12.(목) 18: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제출 불가

○ 제출방법 : **청년인재DB* 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에 신청**

* 접수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서류전형 응시자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필수	**1.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자필서명 필수**
	2. 청년인턴 지원서 1부 (별지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3호)	**자필서명 필수**
	4.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별지4호)	**자필서명 필수**
	5.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발급
해당자	**6. 주민등록초본 1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 및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 PDF 파일로 제출 - 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유의사항	**※ 작성 및 서명 후 PDF 파일 첨부** **※ 제출 서류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 형식으로 제출** 예시) 홍길동_정책제안서 **※ 서명은 자필(온라인, 오프라인)로 작성된 것만 인정 (한글 텍스트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필수	**1. 정책제안서 1부** (별지5호)	
	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6호)	**자필서명 필수**
유의사항	**※ 제출 서류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 형식으로 제출** 예시) 홍길동_청년인턴 지원서 **※ 한글파일 제출 시 작성 파일 원본 제출 (캡쳐본 제출 불가)** **※ 서명은 자필(온라인, 오프라인)로 작성된 것만 인정 (한글 텍스트 불가)**	

6. 유의 사항

- ㅇ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ㅇ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및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055-268-2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미기재*	채용분야	행정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희망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성명, 생년월일**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별지서식 제2호>>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미기재	채용분야	행정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지서식 제3호>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ㅇ 보존사유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ㅇ 보존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ㅇ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⑫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행정	성 명		연락처		e-mail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지서식 제6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